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목적) (생략)</p> <p>1. (생략)</p> <p>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u>제3조까지</u>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p> <p>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u>제3조의2</u>부터 <u>제7조까지</u>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해당 협정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p> <p>4. 법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 및 영 제31조부터 <u>제31조의5까지</u>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제3조의2까지</u>의 -----</p> <p>3. ----- -----, 규칙 <u>제3조의3</u>부터 <u>제7조의9까지</u>----- ----- ----- -----</p> <p>4. ----- -----<u>제31조의5까지</u>, 규칙 <u>제7조의10</u>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정비(현행화) • 관련 규정 정비(현행화) • 관련 규정 정비(현행화)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 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생략)

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 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

• 기준(재정)환율로 개편

• 기준(재정)환율 개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선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항 이동) 제3항 이동 및 근거 조항 변경

제6조(잠정가격신고) ① ~ ⑥ (생략)

<신설>

⑦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잠정가격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31조제10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⑧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최초 신청 이후 잠정가격신고를 허용(관세법 시행령 §16① 2호의2)할 뿐만 아니라, 변경신청 이후에도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ACVA 과세가격 결정방법 변경 요청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관련 운영지침 통보('22.3.16)」 내용을 고시에 반영

- (항 이동) 제8항으로 이동

⑧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사용료) ① ~ ② (생략)

1. ~ 2. (생략)

③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18호서식의 확정가격일괄가산신청서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① ~ 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드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⑨ -----

-----.

제21조(권리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 실제지급가격에 -----

-----.

1. ~ 2. (현행과 같음)

3. -----

-----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발생하는 -----

• (항 이동) 제9항으로 이동

• 문구 통일

• 별지 18호서식 명칭 통일

• 영 제25조제5항 개정 ('22.2.15)에 따른 문구 명확화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삭 제>

1.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2.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3. 관세평가분류원장

4. 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 심사국장, 대구본부세관 납세지원과장·심사과장 및 광주본부세관 심사과장

5.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관세사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나.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원 등의 직원 중에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다. 무역학과, 법학과 등 관세행정과 관련 있는 국내대학 현직교수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마. 관세청 소속 6급 이상의 심사전문관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3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에서 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사안의 긴박성 등 사유로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 검토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 안건 및 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배포할 수 있다.

<삭 제>

③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
은 관세청 관세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기록·관리한다.

<삭 제>

제5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장이 소집하며, 제53조제4항에 따라 구
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삭 제>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삭 제>

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
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
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부서 소관부서내에 간사 1인을 둔다.

제56조(관세평가자문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57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수입물
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부의하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 및 관
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 심사업무 담당국장과 관세평가
분류원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해당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협의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명 이내

2. (생략)

③ ~ ⑤ (생략)

제53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
----- 관세평
가분류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
-----.

② -----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

-----.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53조로 이동
-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
회 폐지에 따른 수정

•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
회 폐지에 따른 수정

⑥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은 심사주무부서에서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하세관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중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장은 -----등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

-----.

<삭 제>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
-.

•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

• (조 이동) 제54조로 이동

•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폐지에 따라 삭제

• (항 이동) 제2항으로 이동

1.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2. ~ 4. (생략)
 5.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6.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세관장 -----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

- 제55조(협의회의 운영) ① ----- 제54조제2항의 -----
----- 제53조-----

-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폐지에 따라 문구 수정
- 제5호 삭제(관세평가자문단 자문 사항)
- (호 이동) 제5항으로 이동
- (항 이동) 제6항으로 이동
- (조 이동) 제55조 이동 및 근거 조항 변경

<신 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1. 심의안전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설) 안전 심의에 대한 제척사항

<신 설>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설) 위원 선정 회피 사항

<신 설>

④ 심의안전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신설) 위원 기피 신청 사항

④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재심의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협의회를 운영할 때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56조(관세평가협의회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관세평가자문단) ①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관세사, 법률전문가, 회계사, 학계 등)로 이루어진 관세평가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항 이동) 8항으로 이동

• 제척, 회피 및 기피 조항 신설(제2항~제4항)하여 삭제

• (신설) 수당 및 여비 지급사항

• (신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자문단 구성하여 자문

<신 설>

제60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의 검토를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사항
3. 기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58조(재검토 기한) -----

----- 2023년
1월 1일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 (조 이동) 제58조로 이동
- 재검토 기한 재설정

<신 설>

부칙 <제2022-00호, 2022.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
과 동시에 ACVA 과세가격 결정방법
변경 요청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관련
운영지침 통보(심사정책과-681, '22.3.16)
는 폐지한다.

• 부칙 신설

현행

[별표 제6호]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서 서식(A)

I.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 일방이 타방을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 (제17조제3항 참조)

7(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7(c)란 :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d)란 : 판매가격이 판매량 산평균액 제5조의2의 판매가격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제6호]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서 서식(A)

I.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 일방이 타방을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 (제17조제3항 참조)

7(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7(c)란 :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d)란 : 판매가격이 판매량 산평균액 제5조의2의 판매가격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 8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 9(a)란 : 로얄티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을 때만 “예”라고 답변. 의문이 있으면 수입전에 세관에 문의.
- 9(b)란 : 9(a)란 또는 9(b)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신고하고, 가능하면 17란과(또는) 18란에 그 금액을 기입
-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 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frac{\text{잠정가산금액}}{\text{신고과세가격} - \text{잠정가산금액}}$$
-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 11(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예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12(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II. Part A (산출근거)

- 13(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불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 13(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 14란 : 원화로 환산하여 13(a)와 13(b)란 금액합계를 기입

III.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

- 8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 9(a)란 : 로얄티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을 때만 “예”라고 답변. 의문이 있으면 수입전에 세관에 문의.
- 9(b)란 : 9(a)란 또는 9(b)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신고하고, 가능하면 17란과(또는) 18란에 그 금액을 기입
-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 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frac{\text{잠정가산금액}}{\text{신고과세가격} - \text{잠정가산금액}}$$
-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 11(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예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12(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II. Part A (산출근거)

- 13(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불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 13(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 14란 : 원화로 환산하여 13(a)와 13(b)란 금액합계를 기입

III.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현 행	
<p>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란 : 15 내지 19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p>	<p>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란 : 15 내지 19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p>
<p>IV. Part C (공제금액)</p>	<p>IV. Part C (공제금액)</p>
<p>21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u>지불</u>하였거나 <u>지불할</u>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2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u>지불</u>하였거나 <u>지불할</u>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3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4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5란 : 21란 내지 24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6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4란과 20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5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p>	<p>21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u>지급</u>하였거나 <u>지급할</u>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2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u>지급</u>하였거나 <u>지급할</u>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3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4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5란 : 21란 내지 24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6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4란과 20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5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p>
<p>2. 기타 가격(제2~6방법) 신고시 서식(B)</p>	<p>2. 기타 가격(제2~6방법) 신고시 서식(B)</p>
<p>I.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3란까지)</p>	<p>I.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3란까지)</p>
<p>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8란 : 4(B)방법에 대해서만은 90일 이내에 결정될 관세가격 추정치를 기입</p>	<p>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8란 : 4(B)방법에 대해서만은 90일 이내에 결정될 관세가격 추정치를 기입</p>

현 행

-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품장 상의 과세가격 근거를 간략히 기재
- 12(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예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13(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II. 제2 또는 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4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기입. 이 가격이 원화가 아니면 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둘째 칸에 기입.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 15(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적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15(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5(a)와 15(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5(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 외에 추가로 지불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 15(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4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 15(d)란 : 14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4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 15(e)란 : 14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4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 16란 : 14(a) 내지 15(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현 행

-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
- 12(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
- 13(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II. 제2 또는 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4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 15(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15(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5(a)와 15(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5(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 외에 추가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 15(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4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 15(d)란 : 14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4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 15(e)란 : 14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4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 16란 : 14(a) 내지 15(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현 행

- 17(e)란 : 14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 18란 : 17(a) 내지 17(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 19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4번 금액에서 16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8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III. 제4방법 경우 (Part D~E)

Part D

- 20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 21란 : 21(a) 내지 21(h)란을 적절히 기입
21(a)와 21(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 21(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고, 21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 21(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 21(c)란 : 22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 21(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 21(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21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 21(f)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 21(g)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 21(h)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현 행

- 17(e)란 : 14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 18란 : 17(a) 내지 17(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 19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4번 금액에서 16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8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III. 제4방법 경우 (Part D~E)

Part D

- 20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 21란 : 21(a) 내지 21(h)란을 적절히 기입
21(a)와 21(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 21(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21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 21(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 21(c)란 : 22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 21(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 21(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21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 21(f)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 21(g)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 21(h)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현 행

24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5(a)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5(b)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4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6란 : 25(a) 내지 25(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7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4란과 26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관(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5(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①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②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③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④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⑤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24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5(a)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5(b)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4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6란 : 25(a) 내지 25(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7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4란과 26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관(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5(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①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②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③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④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⑤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현 행

-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 재판매가격법
- ㉢ 원가가산법
- ㉣ 이익분할법
- ㉤ 거래순이익률법
-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6(a)란 :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제1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 관할 세관 담당자나 관세사에 문의하여 포괄가격신고서 (D) 서식 또는 가격신고서(B) 서식을 사용할지 검토해야 함.

6(b)란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적으로 수입물품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자세한 내용과 가격을 제시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답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라고 답변.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포괄가격신고서(D)나 가격신고서 (B)를 사용할지를 검토해야 함.

7(a)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열티 혹은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구매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

7(b)란 : 계약서상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1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2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3(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4(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5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 재판매가격법
- ㉢ 원가가산법
- ㉣ 이익분할법
- ㉤ 거래순이익률법
-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

6(a)란 :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제1에 문의하여 포괄가격신고서 (D) 가 함.

6(b)란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적으로 수입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로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포괄가격 신고서(D)나 가격신고서 (B)를 사용할지를 검토해야 함.

7(a)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열티 혹은 권리로 지급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

7(b)란 : 계약서상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1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2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3(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4(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5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현행

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임.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한가지 방법만 기재

6란 : 4(b)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7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입.

8란 : 서명하기 전에 8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9(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0(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6란 : 4(b)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

7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

8란 : 서명하기 전에 8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

9(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

10(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

현행

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 됩니까? 예 아니오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_____ (b) 잠정가산율 _____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_____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_____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_____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중개료 []	용기 비용 []
포장노무비 []	포장자재비 []	생산지원비용 []
권리사용료 []	사후귀속이익 []	보험료 []
운임 []	운송관련비용 []	<u>실제지급금액</u>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기타 [] 기타의 경우 사유 []

※ 기타는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①항3호 참고)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_____ (b) 성명 _____
 (c) 전화번호 _____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_____ (b) 성명 _____
 (c) 작성일자 _____ (d) 전화번호 _____

다음페이지 계속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 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_____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_____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_____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중개료
포장노무비 []	포장자재
권리사용료 []	사후귀속
운임 []	운송관련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 기타의 경우 사유 []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_____
 (c) 전화번호 _____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_____
 (c) 작성일자 _____

현 행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A. 산출근거	13.(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4.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5.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 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u>의장</u> , 스케치	
	17. 로열티 및 권리사용료-8(a)란 참조	
	18.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9.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20. 가산비용 총액	

가격신고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A. 산출근거	13.(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4.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5.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 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u>디자인</u> , 스케치	
	17. 로열티 및 권리사용료-9(a)란 참조	
	18.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9.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20. 가산비용 총액	

현행

[별지 제4호서식]



가격신고서(B) - 기타 가격(제2~6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V 표기	
7.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input type="checkbox"/>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input type="checkbox"/>	
(c)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A)방법)	<input type="checkbox"/>	
(d)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B)방법)	<input type="checkbox"/>	
(e) 수출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가산방법(제5방법)	<input type="checkbox"/>	
(f)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과세가격 (제6방법)	<input type="checkbox"/>	
8. 4(B)방법 적용 시에만 해당 : 잠정 90일 이내 결정되는 관세의 과세가격 추정치를 기재하시오.		
9. 신고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4(b)방법 적용 시는 수입 후 90일 이내 제출할 증명자료를 기술하시오. (예시 : 세관심사 시 과세가격 산출에 사용된 자료 등)		
(a)		
(b)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_____	(b) 잠정가산율 _____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_____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_____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_____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별지 제4호서식]



가격신고서(B)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V 표기	
7.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input type="checkbox"/>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input type="checkbox"/>	
(c)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A)방법)	<input type="checkbox"/>	
(d)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B)방법)	<input type="checkbox"/>	
(e) 수출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가산방법(제5방법)	<input type="checkbox"/>	
(f)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과세가격 (제6방법)	<input type="checkbox"/>	
8. 4(B)방법 적용 시에만 해당 : 잠정 90일 이내 결정되는 관세의 과세가격 추정치를 기재하시오.		
9. 신고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4(b)방법 적용 시는 수입 후 90일 이내 제출할 증명자료를 기술하시오. (예시 : 세관심사 시 과세가격 산출에 사용된 자료 등)		
(a)		
(b)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_____	(b) 잠정가산율 _____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_____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_____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_____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현행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제2~3방법 적용	A. 계산의 기초 (대체가격)	14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환율	
	B.공제 조정	15	(a)수량할인 조정	
			(b)상업적 단계 조정	
			(c)운송비용의 차이	
			(d)선적항까지의 비용의 차이	
			(e)보험료의 차이	
	16	B의 소계		
	C. 가산조정	17	(a)수량할인 조정	
			(b)상업적 단계 조정	
			(c)운송비용의 차이	
			(d)선적항까지의 비용의 차이	
			(e)보험료의 차이	
	18	C의 소계		
19	신고 과세가격 (A - B + C)			

제4방법 적용	D.계산의 기초	20	당해물품 또는 동종/유사물품을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	
			환율	
	E.공제비용 : D항목에 포함 된 금액만 해당	21	(a)수탁판매수수료(위탁판매 수입에 한함)	
			(b)이윤 및 일반경비	
			※ 비율표시 : 동종동류비율 □, 납세자제시비율 □ (%)	
			(c)운송비용(수입항-보관참고)	
			(d)보험료 (수입항-보관참고)	
			(e)적하비용 (수입항-보관참고)	
			(f)기타 운송비용(상품계정)	
			(g)추가가공시 비용 (제조원가+부가가치)	
			(h)국내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	
			22	E의 소계
	23	신고 과세가격 (D - E)		

가격신고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제2~3방법 적용	A. 계산의 기초 (대체가격)	14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	
			환율	
	B.공제 조정	15	(a)수량할인 조정	
			(b)상업적 단계 조정	
			(c)운송비용의 차이	
			(d)선적항까지의 비용의 차이	
			(e)보험료의 차이	
	16			
	C. 가산조정	17	(a)수량할인 조정	
			(b)상업적 단계 조정	
			(c)운송비용의 차이	
			(d)선적항까지의 비용의 차이	
			(e)보험료의 차이	
	18			
19	신고			

제4방법 적용	D.계산의 기초	20	당해물품 또는 동종/유사	
			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	
	E.공제비용 : D항목에 포함 된 금액만 해당	21	(a)수탁판매수수료(위탁판	
			(b)이윤 및 일반경비	
			※ 비율표시 : 동종동류	
			(c)운송비용(수입항-보관	
			(d)보험료 (수입항-보관	
			(e)적하비용 (수입항-보관	
			(f)기타 운송비용(상품계	
			(g)추가가공시 비용 (제조	
			(h)국내판매 및 수입과 관	
			22	
	23	신고		

현행

[별지 제5호서식]

 <h2 style="margin: 0;">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1방법) 적용</h2>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관세사부호 - 년도 - 일련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입니다.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1년) 년 월 일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십시오. 세부사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과부호- 년도 - 일련번호
신고서 제출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수입통관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변동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시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C-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 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 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p>5.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p> <p>(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p> <p>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변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통제</p>	<p style="text-align: center;">□ 예 □ 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①~⑧ 택1]</p>
--	--

[별지 제5호서식]

 <h2 style="margin: 0;">포괄가격신고서(C)</h2>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관세사부호 - 년도 - 일련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입니다.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1년) 년 월 일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십시오. 세부사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과부호- 년도 - 일련번호
신고서 제출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u>통관예정지</u>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변동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시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3C-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 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 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p>5.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p> <p>(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p> <p>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변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통제</p>	<p style="text-align: center;">□ 예 □ 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①~⑧ 택1]</p>
--	--

현행

<p>6. (a) 다음의 제한 이외에 구매자의 수입물품 처분, 사용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되는 지역의 제한 혹은, - 수입물품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b) 판매 또는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 받았다면, 제한, 조건 또는 사정의 성격을 기재한 서면을 별도로 제시하시오 -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별도로 제시하시오</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7. (a)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와 권리 사용료가 있습니까? (b) 판매에 수입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습니까? 상기 질문중 하나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시오</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8. 송품장상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금액이 있습니까? (a)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b)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c) 인정되지 않는 할인 - 사용처분상 제한, 조건사정에 영향,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가격할인 등 (d) 기타 간접 지급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해당금액)</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9. 다음과 같은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거래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까? (a) 수수료와 중개료(판매수수료 등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b) 용기 및 포장비(액체, 가스 등의 특수용기 적입, 포장 또는 운송을 위한 특수포장 비용 등)</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10.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무료 혹은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되지만 구매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재화와 용역이 있습니까? (a)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스케치 등</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11.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비용 외에 지급되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습니까? (a)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금액 (b)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c) 기타 비용 (계약과 관련이 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d)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12. 이 포괄 가격신고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신고서가 적용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며, 다음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a) 등록번호는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b) 등록번호는 이 포괄가격신고서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시 기재하겠습니다.</p>	

<p>6. (a) 다음의 제한 이외에 구매자의 수입물품 처분, 사용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되는 지역의 제한 혹은, - 수입물품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b) 판매 또는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 받았다면, 제한, 조건 또는 사정의 성격을 기재한 서면을 별도로 제시하시오 -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별도로 제시하시오</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7. (a)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와 권리 사용료가 있습니까? (b) 판매에 수입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습니까? 상기 질문중 하나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시오</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8. 송품장상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금액이 있습니까? (a)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b)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c) 인정되지 않는 할인 - 사용처분상 제한, 조건사정에 영향,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가격할인 등 (d) 기타 간접 지급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해당금액)</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9. 다음과 같은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거래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까? (a) 수수료와 중개료(판매수수료 등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b) 용기 및 포장비(액체, 가스 등의 특수용기 적입, 포장 또는 운송을 위한 특수포장 비용 등)</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10.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무료 혹은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되지만 구매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재화와 용역이 있습니까? (a)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스케치 등</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11.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비용 외에 지급되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습니까? (a)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금액 (b)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c) 기타 비용 (계약과 관련이 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d)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12. 이 포괄 가격신고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신고서가 적용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며, 다음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a) 등록번호는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b) 등록번호는 이 포괄가격신고서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시 기재하겠습니다.</p>	

현 행

15. 수입 품목 목록

연번	세번부호	품명	거래품명	상표	모델·규격	성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수입 품목 목록

연번	세번부호	품명	거래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행

[별지 제6호서식]

 <h2 style="margin: 0;">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6방법) 적용</h2>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입니다.	관세사부호 - 년도-일련번호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1년) 년 월 일까지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십시오. 세무사항은 <u>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7조</u>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세관과부호 - 년도 - 일련번호
신고서 제출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수입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 변경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 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D-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5.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input type="checkbox"/>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input type="checkbox"/>
(c)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A)방법)	<input type="checkbox"/>
(d)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B)방법)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6호서식]

 <h2 style="margin: 0;">포괄가격신고서(D)</h2>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입니다.	관세사부호 - 년도-일련번호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1년) 년 월 일까지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십시오. 세무사항은 <u>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u>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세관과부호 - 년도 - 일련번호
신고서 제출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통관 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 변경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 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4D-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5.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input type="checkbox"/>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input type="checkbox"/>
(c)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A)방법)	<input type="checkbox"/>
(d)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B)방법)	<input type="checkbox"/>

현행

8. 이 포괄 가격신고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신고서가 적용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며 다음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 (a) 포괄신고 등록번호는 위의 5번의 평가방법으로 결정되는 수입거래의 관세평가에만 사용하겠습니다.
 - (b) 등록번호는 포괄 신고서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 기입 하겠습니다.
 - (c) 물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된 외화로 표시된 금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어떤 금액도 수입신고일자의 과세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겠습니다.
 - (d) 과세가격에 대한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 (e) 세관의 요구시 등록번호가 표시된 포괄 가격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9.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명
(c) 전화번호	

10.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8. 이 포괄 가격신고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신고서가 적용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며 다음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 (a) 포괄신고 등록번호는 위의 5번의 평가방법으로 결정되는 수입거래의 관세평가에만 사용하겠습니다.
 - (b) 등록번호는 포괄 신고서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 기입 하겠습니다.
 - (c) 물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된 외화로 표시된 금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어떤 금액도 수입신고일자의 과세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겠습니다.
 - (d) 과세가격에 대한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 (e) 세관의 요구시 등록번호가 표시된 포괄 가격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9.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명
(c) 전화번호	

10.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현 행

11. 수입 품목 목록

연번	세번부호	품명	거래품명	상표	모델·규격	성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수입 품목 목록

연번	세번부호	품명	거래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행

[별지 제8호서식]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15일)

① 수입신고번호	② 잠정가격신고 물품
③ 수입신고 일자	④ 수입신고 수리일자
⑤ 잠정 가산율	⑥ 확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⑧ 가격신고 변경항목 (잠정신고 항목만 확정신고 가능)

구분	잠정가격 (화폐 단위:)	확정가격 (화폐 단위:)	차액
신고가격 (란 번호)			
가산요소 (가산 항목명)			
공제요소 (공제 항목명)			

⑨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51조의2제1항 적용) 예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직인

1. 송품장

[별지 제8호서식]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① 수입신고번호	② 잠정가격신고 물품
③ 수입신고 일자	④ 수입신고 수리일자
⑤ 잠정 가산율	⑥ 확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⑧ 가격신고 변경항목 (잠정신고 항목만 확정신고 가능)

구분	잠정가격 (화폐 단위:)	확정가격 (화폐 단위:)	차액
신고가격 (란 번호)			
가산요소 (가산 항목명)			
공제요소 (공제 항목명)			

⑨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11조제1항 적용) 예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1. 송품장

[별지 제16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별지 제20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 【일반용】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적용 기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인	① 상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적용 기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

현 행

[별지 제2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인	① 상 호	
	③ 주 소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과세관청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례보고서를 제출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과세관청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례보고서를 제출